

국제 ODA 동향

(2008. 8)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ODA 토픽	[Page]
<input type="checkbox"/>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공여 권고 이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C회원국들의 최빈국앞 비구속성 원조공여 권고 이행실적을 살펴봄으로써 동 권고가 비구속성 원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정리 	[2]
<input type="checkbox"/> 효과적인 원조관리: DAC Peer Review의 12가지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07년간 실시된 모든 DAC 회원국의 Peer Review를 통해 DAC 회원국의 원조 동향 및 원조 관리에 관한 시사점을 정리 	[9]
ODA 단신	
<input type="checkbox"/> 'Scaling Up: Aid Fragmentation, Aid Allocation and Aid Predictability'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여국의 원조규모 확대 노력을 원조의 분산, 예산배분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한 DAC 보고서의 주요 내용 요약 	[20]
<input type="checkbox"/> DAC 제 59차 통계작업반회의(WP-STA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통계수집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통계작업반회의의 '08년도 회의 주요 내용 정리 	[25]
<input type="checkbox"/> DAC 제 12차 원조효과작업반(WP-EFF) 회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9월 개최될 아프리카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한 각국의 논의 내용 정리 	[29]
ODA 자료	
<input type="checkbox"/> 세계은행 및 OECD의 2008년 국가분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7월부터 적용되는 세계은행 및 OECD의 국가분류 현황 조사 	[31]
<input type="checkbox"/> 미국의 ODA 지원 체제 및 원조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원조체제 개혁 및 원조 기관 개편 내용 조사 	[36]
EDCF 소식	
<input type="checkbox"/> 2008년 2/4분기 EDCF 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2/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및 '08년 6월 말 현재 EDCF 업무통계 	[41]

ODA 토픽 1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공여 권고 이행 점검

【요약】

- DAC회원국들의 최빈국앞 비구속성 원조공여 권고 이행실적은 매우 양호
- 당초 우려에 불구하고 최빈국앞 원조규모와 비구속성비율은 오히려 증가
- 계약 수주국을 살펴보면 평균 40%가 공여국, 30%가 수원국, 18%가 他 DAC 회원국, 11%가 他 개발도상국임
- 최빈국이 아닌 HIPCs 8개국을 동 권고의 적용대상으로 포함

1. 최빈국앞 비구속성 원조공여 권고(이하 “비구속성 권고”) 개요

- 최빈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기 위한 2001년 비구속성 권고는 2002년부터 시행되어,
 - DAC는 회원국들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고위급회담(High Level Meeting)에 연간진행보고서를 제출
 - 비구속성 권고의 적용대상 확대를 논의하기 위하여 DAC는 권고의 이행 상태 및 권고의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보고서¹⁾를 2008년 고위급 회담에 제출
- 비구속성 권고 이행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Data Base로부터의 통계를 활용

1) DAC 회원국의 권고 이행 상태에 대한 분석자료는 동 점검보고서의 Part I을 구성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효과적인 공여국-수원국의 파트너십 등에 대한 비구속성 권고의 영향은 동 이행점검보고서의 Part II를 구성함. Part II는 DAC 산하기구인 WP-EFF(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와 EVALUATION NETWORK(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에 의해 작성되어 2009년 발간될 예정임.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보	➔	권고안의 적용규정 이행여부 점검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	최빈국앞 원조규모추세 및 노력분담 점검
비구속성 원조의 사전·사후통지 DB	➔	투명성 규정 준수여부 점검
DAC통계	➔	양자간원조의 구속성 상태 점검

2. DAC회원국의 권고안 이행 실적

□ 최빈국앞 비구속성 비율은 권고안 시행전 80%수준에서 2006년 98%까지 증가

최빈국앞 비구속성 원조비율증가 추세

(승인기준, USD백만, 2005년 기준 불변가격)

구 분	Baseline '99~'01 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양자간원조총액	56,198	63,715	77,531	77,590	98,588	99,425
최빈국앞 양자간원조 총액	10,951	14,158	19,200	18,734	21,239	20,707
비구속성 원조액	6,254	9,567	13,674	12,726	16,752	17,196
비구속성비율	57.1%	67.6%	71.2%	67.9%	78.9%	83.0%
권고안적용대상원조 총액	5,336	6,780	10,121	8,257	8,876	10,369
비구속성 원조액	4,282	6,135	9,565	7,288	7,905	10,172
비구속성비율	80.2%	90.5%	94.5%	88.3%	89.1%	98.1%

□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DAC회원국의 최빈국에 대한 구속성 원조 공여 일부 존재

○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지내역을 살펴보면, 비구속성 권고 시행이후에도 DAC 회원국의 최빈국앞 구속성 원조공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는 크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

- 최빈국앞 구속성 원조 통지건수 : 36건(2002년) → 11건(2006년)
- 최빈국앞 구속성 원조공여국 : 8개국(2004년) → 4개국(2006년)

최빈국앞 구속성 원조 통지 추세

(SDR 백만,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벨기에	-	-	1.5	1	2.0	2	9.5	8	0.5	1
덴마크	23.0	3	38.5	4	65.5	5	45.0	2	62.5	2
핀란드	30.0	6	-	-	-	-	-	-	-	-
프랑스	8.0	2	-	-	-	-	-	-	-	-
이탈리아	-	-	-	-	17.0	2	-	-	-	-
네덜란드	211.5	24	30.0	1	8.5	1	-	-	-	-
노르웨이	-	-	-	-	2.5	1	-	-	-	-
포르투갈	-	-	-	-	-	-	45.0	2	-	-
스페인	8.5	1	31.5	5	2.5	1	4.0	1	8.5	1
스웨덴	-	-	21.0	2	8.5	1	-	-	-	-
미 국	-	-	-	-	262.0	3	-	-	102.0	7
계	281	36	122.5	13	368.5	16	103.5	13	173.5	11

- 덴마크는 구속성 혼합신용을 최빈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운용중
 - 2006년도 1,200만 유로의 예산이 최빈국앞 구속성 혼합신용에 배정
- 벨기에와 스페인은 최빈국에 대한 구속성 원조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주기적으로 최빈국앞 구속성 원조를 공여하고 있음

3. 최빈국앞 원조공여 추세

- 비구속성 권고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동 권고안 시행에 따른 최빈국앞 양자간 원조흐름의 축소를 방지하는 것이었으나,
 - 당초 우려와는 달리, 권고 시행이후 최빈국앞 원조흐름의 절대규모와 최빈국 원조비율이 모두 크게 증가
 - 최빈국앞 원조규모의 증가 : 평균 110억불('99-'01) → 207억불('06)
 - 최빈국 원조비율의 증가 : 평균 17%('99-'01) → 23%('06)
- ⇒ 비구속성 권고 시행이 최빈국앞 원조흐름의 절대규모 및 총 원조액 대비 최빈국앞 원조비율을 감소시키지는 않음

최빈국앞 양자간 원조 공여 추세

(승인기준 USD십억, 2005년기준 불변가격)

구 분	'99-'01 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최빈국앞 양자간원조	11.0	14.2	19.2	18.7	21.2	20.7
채무구제 제외	9.4	11.3	12.3	14.4	18.0	18.5
최빈국앞 원조비율						
채무구제 포함	19.5%	22.2%	24.8%	24.1%	21.5%	20.8%
채무구제 제외	17.2%	19.1%	16.4%	19.2%	23.5%	23.0%

□ 비구속성 권고의 긍정적 파급효과

- 동 권고의 적용대상이 아닌 원조사업유형(기술협력, 식량원조)까지도 비구속화되는 효과가 발생

- 최빈국앞 총 양자간 원조액 중 동 권고 적용대상이 아닌 원조사업의 비구속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 31%('99~'01)→41%('06)

□ DAC회원국의 구속성 여부 보고의 한계

- 2006년 DAC 통계에 따르면 구속성 여부가 보고되지 않은 원조사업의 비율이 43%를 차지²⁾해, 완전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

2) 원조사업의 구속성 여부에 대한 DAC 통계보고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및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4. 회원국들간 노력분담

□ 비구속성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간의 노력분담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지표를 이용

○ 최빈국앞 양자간 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지표A) =

$$\frac{\text{최빈국앞 비구속성 양자간 원조액}}{\text{최빈국앞 양자간 원조 총액}} \quad (\text{목표비율 : 0.60})$$

○ 노력분담율(지표B) =

$$\frac{\text{최빈국앞 비구속성 양자간 원조액} + \text{최빈국앞 다자간 원조액}}{\text{GNI}} \quad (\text{목표비율 : 0.04})$$

□ 목표의 초과 달성(2006년 기준)

권고이행을 위한 노력분담 지표

구 분	Baseline (‘99~’01)	2006	목표
지표A	0.55	0.84	0.60
지표B	0.04	0.09	0.04

○ 지표A가 크게 증가한 주요원인은 상당수 회원국들이 최빈국앞 비구속성 양자간 원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도 지표A가 거의 1.00에 근접하며, 일본과 스위스를 제외한 기타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비율도 Baseline(‘99~’01) 평균 대비 크게 상승

- 그리스와 스페인은 목표치(0.60)에 미달한 반면 호주, 포르투갈 및 미국은 지표A가 크게 증가하여 DAC회원국 평균 0.84에 근접 및 도달

5. 수원국 기업의 원조사업 수주율

- 수주사업에 대한 사후통보(ex post notification) 자료를 살펴보면 2003~2006년간 원조사업의 평균 21%를 수원국인 최빈국 기업이 수주

비구속성 원조사업수주 현황(2003~2006)

공여국		수원국		제3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	48%	41%	34%	18%	18%

- 금액기준 수주율은 매년 변동폭이 매우 큰 데 반해 건수 기준 수주율은 2005년³⁾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6. 비구속성 권고의 적용대상국가 확대

- 최빈국이 아닌 고채무빈국(HIPCs)을 비구속성 권고의 적용대상국가에 포함

- 39개의 HIPCs 중 31개국⁴⁾이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 권고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최빈국이 아닌 나머지 8개국⁵⁾의 HIPCs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볼리비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니카라과, 콩고인민공화국

- '08.5.22자, DAC 고위급회담에서 비구속성 권고의 적용대상을 최빈국이 아닌 8개의 HIPCs로 확대할 것을 결정

- 동 국가들을 적용대상국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HIPCs에게 평등한 대우(treatment)를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회원국간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비구속성 권고의 이행 효과⁶⁾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동 권고의 목적에도 부합

* 8개 HIPCs을 적용대상에 신규로 포함할 경우, 2.8억불 상당의 비구속성 원조의 증가가 예상

3) 2005년중 건수 기준 공여국 기업의 수주비율은 60%를 기록하여 2003-2006년간 평균 수주비율 41%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7.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비구속성 권고 적용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

- 동 권고이행노력이 비적용대상인 원조사업유형(기술협력 등)으로까지 확대 되는 효과(Spill-over effect) 및 금번 최빈국이 아닌 HIPC를 적용대상에 포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동 권고의 이행효과를 확대하고자 하는 DAC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DAC내에서 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비구속성 권고의 이행효과 확대노력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구체화 될 가능성이 있음
 - 적용대상국가의 확대 : 현재 동 권고의 적용대상이 아닌 국가그룹 (예: 기타저소득국)을 포함
 - 적용대상 원조사업유형의 확대 : 현재 동 권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술협력이나 식량원조도 비구속화 대상에 포함

□ 우리나라도 원조의 비구속화라는 국제원조사회의 흐름에 부응할 필요

- 국제원조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도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원조사회의 비구속화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UN천년개발목표달성 및 파리선언의 원조효과⁴⁾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
- 한편으로 '03~'06년 중 DAC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로 통지된 사업 중 48%를 원조공여국 기업이 수주했다는 통계결과는 우리나라도 원조의 비구속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아국기업의 수주 기반 구축 등 원조를 통한 국민경제적 편익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시사

자 료 : Implementing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DCs, Comprehensive Review: Part (DCD/DAC(2008)13/REV2), OECD. 2008. 4.

작 성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

목차보기

4) UN천년개발목표중 Target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의 진도지표중 하나가 'Proportion of bilate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OECD/DAC donors that is untied'이며, 2005년 선포된 파리선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12개 진도지표 중 8번째가 '원조의 비구속화'임

ODA 토픽 2

효과적인 원조 관리: DAC Peer Review의 12가지 교훈

【요약】

- DAC 회원국의 원조 정책과 성과를 4년마다 평가하는 DAC 고유의 업무인 Peer Review는 ODA 전략수립, 국가적인 ODA 체계 관리, 원조기관의 집행 관리의 세가지 측면에서 여러 교훈을 주고 있음
- 동 Review는 DAC 회원국 내에서 원조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원조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여국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I. 개요

- 전 DAC의장인 Richard Manning은 2003~2007년 사이에 실시된 23개 회원국의 Peer Review를 통해 12가지 교훈을 도출
- 12가지 교훈은 크게 1. 전략, 2. 조직 관리, 3. 원조 집행 및 관리의 세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고 : DAC Peer Review

- DAC Peer Review⁵⁾는 회원국의 원조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DAC 고유의 업무로, 모든 DAC 회원국은 4년에 한번 씩 Peer Review를 받게 됨
- DAC의 정책을 파급하는 중요한 도구인 Peer Review는 회원국의 원조 정책과 원조 성과 두가지 측면을 모두 평가함
- 우리나라는 비 DAC 회원국으로서 두 번째로 Special Review를 수검('08년 3월 4~6일). DAC 사무국 직원 및 캐나다, 호주 원조기관의 관계자들이 실사단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원조 관련 정부부처·기관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원조 체계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

5) www.oecd.org/dac/peerreviews

II. 원조 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교훈

1. 원조정책 관련 상충하는 국익을 조정

교훈1: 단기적 압력이 장기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할 것

- 여러 가지 국익이 상충할 때에도 원조정책이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지속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 원조정책은 현재 무역, 정치적 관계, 안보 등과 같은 국가적 이해관계 속에서 다뤄지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들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도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

- [사례] 미국 : 원조정책에 국익을 반영
 - 미국의 정치 구조상 원조정책은 수원국의 필요뿐만 아니라 자국의 외교정책을 반영
 - 특히, 9/11 이후 원조의 외교적 중요성이 강화되어, 2002년 국가안보전략에는 외교(diplomacy), 안보(defence)와 더불어 개발(development)이 한 축으로 추가됨
 - 원조를 외교정책수단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미국사회에 비판적 논의가 활발히 일고 있음

2. 정책적 일관성을 달성

교훈2: 공여국은 무역·환경·이주정책 등을 수립할 때 그것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관한 공여국의 명확한 의무를 규정해야 함

- 다양한 국내 정책이 개도국의 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유의해야 하며, 국내 정책목표가 개도국의 경제개발목표와 상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무역·이주·환경 등 중요한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개도국의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 EC(European Commission)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EU 27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 [사례] 스웨덴 : 정책의 일관성 증진
 - 2003년 스웨덴 의회는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라는 가이드라인을 승인
 - 동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Doha Agenda 등 다자기구의 개발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
 - 정부는 본 가이드라인 적용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함

3. 개발협력 인식 증진

교훈3: 원조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홍보하는 데 투자할 것

- 개발협력 인식 증진(Public awar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은 정치적·입법적 지원을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임
 - 원조에 대한 공여국 국민의 지지는 보통 공여국의 문화적 전통(수원국과의 종교적 관련성 등)이나 공여국의 과거 경제개발 경험에 의해 사전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pro-active)인 홍보 전략이 필요
 - 최근 MDG(새천년개발목표) 등의 국제적 캠페인을 자국의 원조와 연계시켜 홍보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원조에 대한 국민의 회의적 반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원조가 개도국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려 노력해야 함

□ [사례] 아일랜드 : 높은 원조 지지율

- 아일랜드의 원조는 국민의 90% 이상의 지지를 꾸준히 받아왔음
 - 과거 아일랜드의 빈곤 경험뿐만 아니라,
 - NGO 주도의 개발원조 교육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경제불황기(80~90년대)에도 안정적인 원조를 가능하게 함

4. 법적 · 정치적 기반을 조성

교훈4: 개발원조의 목적을 법 또는 정책문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할 것

- 최근 Peer Review는 원조정책의 전반적인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
 - 개발원조에 높은 관심을 가진 정부들은 명확한 목표설정이 개발원조에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밝힘
 - 신흥공여국도 국내 원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원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

Ⅲ. 조직 관리에 있어서의 교훈

1. 효과적인 리더십 구조를 구축

교훈5: 대중적으로 신임받는 인사를 리더로 둘 것

- 개발원조의 정치적 중요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원조기관의 리더도 장·차관급의 고위급 인사인 경우가 많음
 - 영국·독일은 개발원조 전담 부처가 있으며, 이 두 나라를 포함한 7개 회원국은 개발장관(Development Minister)이 있음
 - 기타 공여국은 차관(Deputy Minister)이나 국무장관(State Secretary)이 개발협력의 책임자임

□ [사례] 네덜란드 : 두 명의 장관을 둔 리더십 구조

- 네덜란드는 외교부 내에 외교담당 장관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전담하는 장관이 있음("Two-headed" structure)
 - 이 두 장관의 통합적인 원조 정책 관리를 위해 외교부 직원은 3~4년 단위로 개발관련 부서와 외교관련 부서를 순환하는 근무제 실시

2. 분산된 원조기관의 합리적 관리

교훈6: 일관적인 원조정책 수행을 위해 양자간 원조 구조를 합리화할 것

- 일부 회원국은 시너지와 보완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조기관을 통합하거나, 통합을 고려하고 있음. DAC는 유·무상 원조 및 기술협력에 대해 별도의 정책을 유지하기보다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함
- 그러나 정부기관간 협력 시스템은 국별 차이가 크며, 원조 수행기관이 정책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조 수행 체계에 대해 획일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결론
 - Peer review는 어떤 시스템이 최적 시스템인지 결론내리지 않고 있으며, 다만 중요한 것은 원조기관의 책임성, 신뢰성, 전문성 구축임을 강조
 - 연구기관, 대학, 재단 등과의 연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

□ [사례] 일본 : 원조 집행기관 통합

- 2006년 일본 의회는 분산되어 있던 여러 원조기관을 통합하고, 유·무상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
 - 외무성의 양자·다자 원조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한 개 국(bureau)으로 축소
 - 외무성의 무상 원조 업무 일부와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유상차관 업무를 JICA(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 통합

3. 다자간 원조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관리

교훈7: 다자간 원조 수행기관간 전략적 협력을 증진시킬 것

- DAC 공여국의 평균 다자간 원조 비중은 23%(채무구제를 제외하면 30%)이며, 국가에 따라 9% ~ 55% 수준으로 편차가 심함
- Peer Review는 다자간 원조 수행기관간 전략적·기능적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왔음
 - 많은 국가에서 재무부가 채무구제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출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UN에 대한 출연을 담당
 - 분산된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모든 다자간 원조 수행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

<표2> 국제금융기구관련 업무 주관 부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Economy) 주관	타 부처 주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미국	호주,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4. 현장 중심의 원조 관리

교훈8: 현장 중심의 원조관리(decentralization)를 지향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해줄 양질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필요함

-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원조 계획 수립시 수원국의 개발계획을 고려한 국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원조관리는 수원국의 여건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여타 기관과 원활히 협조하는데 유리

□ 그러나 현장 중심의 관리가 보편화되면 높은 현지화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부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현지 전문 인력 활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양질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사례] EC : 현장 중심의 원조 집행

- EC 원조 개혁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원조 집행 권한을 현장으로 이양하는 것
 - 현장에서 보다 나은 관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결정하지 않도록 함
- 자금조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본부에서 하되, 개별 수원국 단위의 심사, 입찰 및 구매, 자금지출 등은 현지 사무소에서 결정
 - 2005년 지역별 기금(geographic funds)의 80%이상과 주제별 기금(thematic funds)의 66%가 현지 사무소에서 운영되었으며, 현지에서 1,559명의 스태프를 고용했음

IV. 원조 집행 및 관리 차원에서의 교훈

1. 원조 규모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교훈9: 원조기관 직원 1인당 원조 집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원조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음

- Peer Review는 원조 규모 확대를 계획할 때, 인력 충원 등 관리 차원에서 요구되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
 - 공여국들은 최근 원조 규모의 확대를 공언하고 있으나, 급격한 규모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 역량에는 한계가 보임
 - 최근 원조 규모 확대는 채무구제의 일시적 증가에 의하지만, 향후 프로그램형 원조(programmable aid)의 증가 등으로 계획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도 원조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조직운영을 효율화 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함

- 많은 DAC회원국에서 1인당 원조집행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정부의 조직 규모 축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이(more with less)”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Peer Review는 원조집행규모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운영 방법을 효율화하고 인력충원의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또한, 재정지원·분야별 프로그램 원조 등 인력충원 없이 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wholesaling”)과 현지 실무자를 늘리고 권한을 더 많이 이양하는 방법(“delegated partnerships”) 등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

□ [사례] 스페인 : 인력 부족은 원조 규모 확대의 위협요인

- 스페인의 중장기원조계획(Master Plan for Spanish Co-operation 2005-08)에는 다양한 원조 프로그램 및 지역·분야별 집중 계획, 중장기 재원조달계획 등 스페인 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음
-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원조를 관리할 인력 확충은 고려되지 않아, 인력 확충에 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2. 국가·분야별 선택과 집중

교훈10: 더 적은 국가와, 더 적은 분야에 집중할 것

- 많은 공여국들이 자국의 정치적, 행정적 결정에 의해 단발적으로 지원 지역과 분야를 결정하고 있음
- 2005년 DAC 회원국들은 평균 109개 수원국을 지원했으며, 이 수치는 10년 전과 비교해 동일한 수준
- 상위 10개국에 지원된 금액의 비중이 2005년 평균 66%로, 10년전(52%)에 비해 나아지긴 했으나, 이라크 등 특정국가에 집중된 채무구제의 영향이 커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999~2001년 사이 DAC 회원국에서는 매년 평균 35,000건의 집행이 있었고 건당 평균 규모는 150만 달러였음. 그러나 2001~2005년 사이 평균 집행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 **Peer Review**는 지역·분야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권고

- 많은 DAC 회원국들이 자신의 비교우위를 고려해 소수의 수원국에 장기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에 동의하고 있음

3. 성과중심의 관리·평가

교훈11: 성과중심관리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되, 수원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 많은 공여국의 의회와 시민사회는 성과중심의 관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성과관리 노력이 주목받고 있음

- 모니터링 및 평가, 감사 등 전통적인 피드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성과관리는 최근 원조기관의 부서/직원 평가와 연계되는 경향이 강해졌으나, 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성과중심의 관리 방식은 “실적 포장(tell the story)”에 치우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잘못된 인센티브에 치중하게 할 수 있음

□ **Peer Review**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 및 수원국과의 공동 평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

-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이 수원국 전반에 끼친 영향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여국 중심의 평가체제를 벗어난 보편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평가 역량 증진이 장기적 해결책임

4. 인적자원관리

교훈12: 현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개발해야 함. 단, 양질의 기관일수록 양질의 인력을 끌어들이 수 있음

- **Peer Review**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 인력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해 왔음
 - 각국은 정부규모 축소, 기존 전문인력의 은퇴, 높은 이직률 등 원조 인력관리에 있어 다양한 제약조건에 직면해 있음
 - Peer Review는 국내유관기관 및 다자간 원조기구와의 인력 공유·파견 등을 통해 인력관리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Peer Review는 또한 원조 관련 업무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 실무자의 사기를 높일 것을 권고
- **현장중심의 원조관리가 늘어나면서 현지 인력 채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
 - 현장의 자국민 전문인력의 이직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지인력 채용은 지속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그러나 현지 인력이 원조 기관에 문화적으로 잘 융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원국에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원조기관들이 현지 고급인력을 독차지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사례] 수원국과 공여국의 원조 인력 훈련을 위한 Train4Dev**
 - 2003년 수원국 및 공여국 원조인력간 포럼인 Train4Dev가 설립되어 매년 공공채무관리, 재난방지, 재건구호 등의 주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동 포럼은 1) 원조 관련 공통 주제에 대한 상호 협력과, 2) 원조기관 직원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3)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DAC의 정책과 사례를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V. 시사점

- Peer Review는 DAC의 원조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며, 아국 원조정책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원조 규모와 효과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정책과 관리의 균형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함
 - 우리나라 ODA의 중요 현안인 원조 규모 확대, 원조집행기관의 효율화, 성과평가제도 수립 등에 활용
- 한편, 우리나라 원조공여여건 및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 선진공여국 대비 원조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여건이 상이한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원조 공여 여건 및 특성을 Peer Review 수감을 통해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공여국 입장에 대한 선진공여국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

자 료 : 1. Richard Manning, *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Chapter 2. Effective Aid Management: Twelve Lessons from DAC Peer Reviews. OECD Journal on Development. 2008.
2. <http://www.oecd.org/dac/peerreviews>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

ODA 단신 1

“원조의 규모 확대 :

원조의 분산, 예산배분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의 평가” 주요 내용
Scaling Up: Aid Fragmentation, Aid Allocation, and Aid Predictability -
Report of 2008 Survey of Aid Allocation Policies and Indicative forward Spending Plans

1. 보고서 발간 배경

- 2005년 Millennium+5 Summit 회담(새천년개발목표 중간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원조규모 확대 목표 달성(2010년까지 500억불 추가 조성(2004년가격))을 위한 DAC 회원국의 현황을 리뷰한 보고서
 - 보고서는 원조규모 확대 목표 달성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다루는 ‘원조의 예측가능성’ 부분과 각국별 원조 운영 세부계획을 다루는 ‘원조의 배분’, 공여기관사이의 원조 중복 문제를 다루는 ‘원조의 분산’의 세 부분으로 구성
 - 본 보고서는 특히 실제 가능한 원조규모 확대 폭을 예측하고, 원조의 분산 및 중복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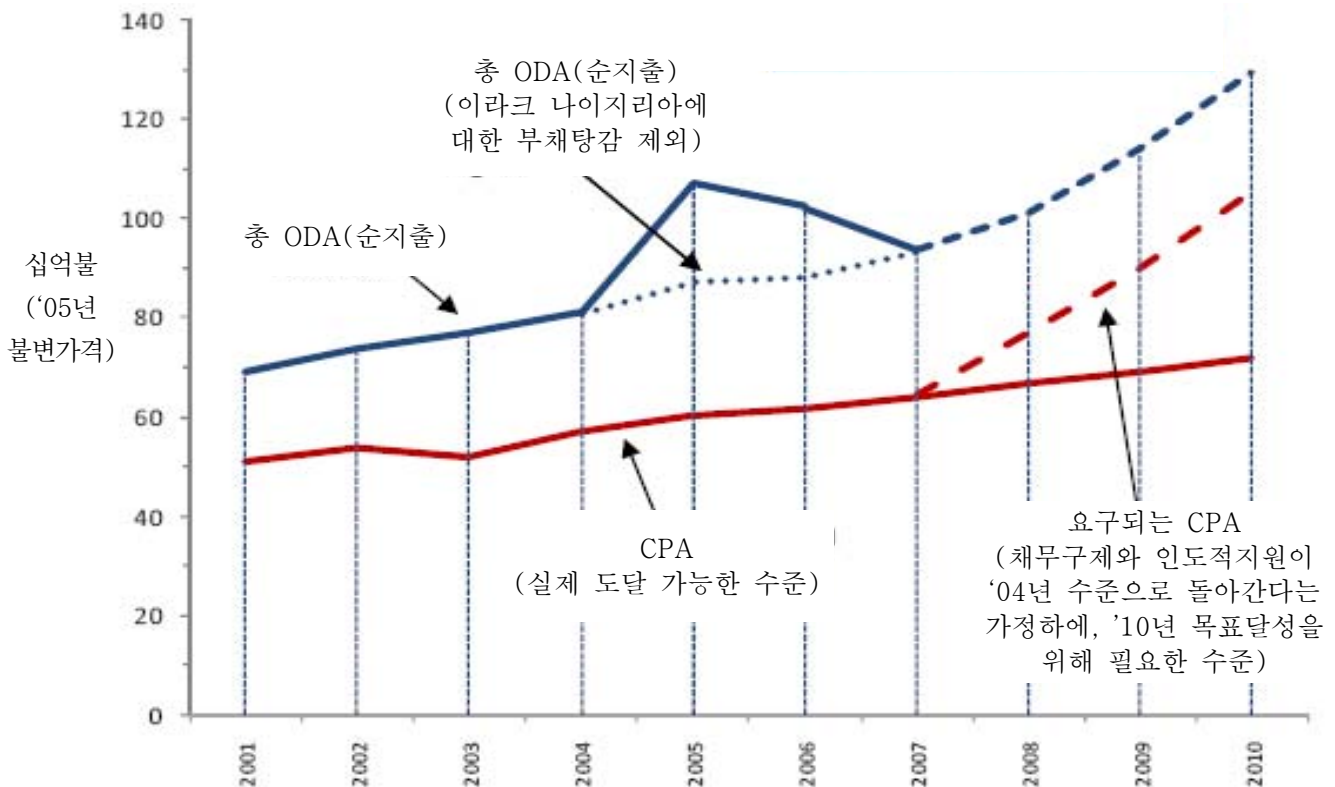
2. 보고서 내용

- 원조의 예측가능성 (Aid Predictability)
 - 예측가능성 관련 첫 번째 이슈는 과거 원조의 집행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원조 공여액 추이를 예측하는 것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DAC 회원국이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500억불(2004년 가격 기준) 가운데 210억불은 이미 집행되었으나, 약 300억불이 미집행 되었으며, 향후 원조예산을 급격히 증가시켜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2 참조)

○ 예측가능성 관련 두 번째 이슈는 각 수원국별 미래 원조 규모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장기의 개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

- 153개 수원국 가운데 102개국은 2010년까지 자국이 수혜받는 원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가운데 33개국은 각 1억불이상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51개 수원국은 원조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8개 최빈국과 4개 취약국가(fragile states)에 대한 원조는 200억불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DAC회원국의 ODA(순지출) 추이 (2007~2010년은 DAC 사무국의 예측치)



- 주 : 1. CPA(country programmable aid)는 채무구제, 인도적지원, 행정비용, 난민지원, NGO지원, 연수생 간접비용(imputed student costs)을 제외한 프로그램/프로젝트 원조를 의미
2. DAC 사무국은 채무구제와 인도적지원과 같은 일시적 요인이 원조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했던 2005~2006년을 제외하고 추이를 예측

□ 원조의 배분(Aid Allocation)

-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의 원조 예산 수립 여부 및 금액, ODA/GNI 비율 목표 수준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리 (본 자료를 토대로 원조의 예측가능성 부분의 '08~10 실제 도달 가능한 예측치 작성)
- 다수의 회원국들이 매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확정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중기운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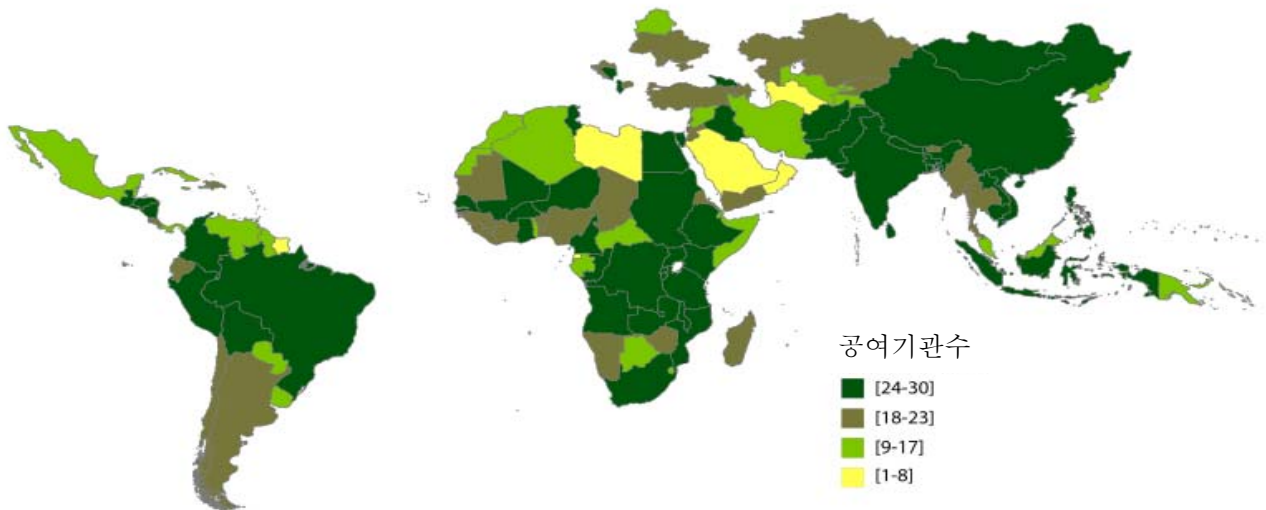
중기예산계획을 수립한 DAC 회원국

국가	중기예산편성여부	ODA/GNI(%) 목표
호주	'11년까지 계획 수립	'10-11까지 0.36 달성
오스트리아	3년단위 계획 수립(rolling basis)	'10년까지 0.51 달성
핀란드	'11년까지 계획 수립	-
독일	4년 단위('08-11) 중기 계획 수립	'10년까지 0.51 달성
이탈리아	'07년 처음으로 '07-09 중기운용계획 마련	'10년까지 0.51 달성
뉴질랜드	매년 예산을 승인하지만 3년 단위의 중기 계획서(Statement of Intent) 예산편성안에 기반을 둠	중기 계획서에 따르면 향후 3년내 0.35 수준 달성 예상
스페인	예산안 제출시 3개년 계획 포함	'12년까지 0.7 달성
스웨덴	예산안 제출시 3개년 계획 포함	'08-10년 연간 1.0 달성
스위스	분야별 예산을 4~5년 단위로 책정	'10년까지 0.4 달성 ('09년에 새 목표 수립 예정)
영국	3년에 한번 Spending Reviews를 통해 개괄적 예산 편성	'10-11까지 0.56 달성

□ 원조의 분산(Aid Fragmentation)

- 공여기관간 원조 중복 실태를 살펴보고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수원국별 공여국의 수, 수원국별 원조액에서 상위 15개 원조공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측정
 - '05~06년 사이에 38개 수원국이 25개 이상 공여기관의 원조를 받았으며, 이중 24개의 수원국은 원조총액에서 상위 15개 원조공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밝혀 많은 원조 공여기관이 분산적으로 원조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38개국(대부분 작은 도서국가)은 10개 이하의 원조기관의 원조를 받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음
 - 수원대상국 수는 미국(128개국), 일본(135개국), EC(144개국)가 가장 많았으며, 수원국이 가장 적은 나라는 포르투갈(20개국)임

수원국별 원조 공여기관의 수(총지출 기준, '05~'06)




3. 시사점

- 본 보고서는 DAC 회원국들의 원조 예산 편성 현황을 조사하여 기존에 수립한 목표가 과연 달성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음
- 또한, 각 회원국별로 수립된 원조의 국별·연도별 배분 계획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 원조기관의 중복과 원조의 분산의 정도가 심하며, 연도별 배분 계획도 1년 단위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자 료 : Scaling Up: Aid Fragmentation, Aid Allocation, and Aid Predictability - Report of 2008 Survey of Aid Allocation Policies and Indicative forward Spending Plans, OECD, 2008. 5.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단신 2

DAC 제59차 통계작업반(WP-STAT)회의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OECD DAC 산하기구(Subsidiary body)중 하나인 WP-STAT(Working Party on Statistic)⁶⁾는 ODA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통계수집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통계작업반회의(보통 6월)와 비공식 통계작업반회의(보통 2월)를 개최
 - 통계작업반회의는 ODA 개념 정의, ODA 분류기준 마련, ODA 적격 수원국 및 국제기구 선정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공여국 ODA 통계담당자간의 실무회의임
 - 제59차 통계작업반회의는 2008. 6. 12~6. 13의 2일간 27개국 대표 및 U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
 - 참가국 : 22개 DAC 회원국과 한국, 체코,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2. 주요 논의 내용

- 신규 원조형태(Type of Aid) 분류안 논의
 - ODA를 보다 명확히 분류하여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06년 6월 제57차 통계작업반회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원조형태분류안이 수차례 수정을 거쳐 금번 회의에서 채택

6) WP-STAT은 수원국과 다자간 원조기구에 대한 자금 흐름의 통계정보를 수집·검토·개선하며, ODA 적정성 여부, 통계보고의 기준 및 용어 정의, 통계자료의 정확성, DAC 통계자료 생산 등에 관해 DAC에 권고

채택된 신규 원조형태분류
(유·무상 및 다자간 원조 전체 대상)

Type	Sub-type	Description
A		예산지원(Budget support)
	A01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A02	섹터예산지원(Sector budget support)
B		Core Contribution 및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Core contribution and pooled programmes and funds)
	B01	NGO, 기타 민간단체, 민관협력 및 연구기관 앞 Core support (Core support to NGOs, other private bodies, PPPs and reserch institutes)
	B02	다자간기구 앞 Core contribution (Core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institutions)
	B03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에 대한 자금지원(Contributions to specific-purpose programme and funds manag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04	공동기금 등에 대한 자금지원 (Basket funds/pooled funding)
C		프로젝트형태의 사업(Project-type interventions)
	C01	프로젝트형태의 사업(Project-type interventions)
D		전문가 및 기타 기술지원 (Experts and other technical assistants)
	D01	공여국 인력지원(Donor country personnel)
	D02	기타 기술지원(Other technical assistance)
E		공여국내 장학금 및 교육비용 (Scholarships and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E01	공여국내 장학금 및 직접연수비용 (Scholarship/training in donor country)
	E02	공여국내 간접연수생비용(Imputed student costs)
F		채무구제(Debt relief)
	F01	채무구제(Debt relief)
G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not included elsewhere)
	G01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not included elsewhere)
H		기타 공여국내 비용(Other in-donor expenditures)
	H01	개발인식증진(Development awareness)
	H02	공여국내 난민지원(Refugees in donor countries)

○ 신규 원조형태분류 적용 계획

- '09년 비공식 통계작성반회의에서 신규 원조형태분류안 채택에 따른 CRS, CRS++, DAC 통계보고 양식 및 지침서 개정과 과거 자료와의 Crosswalk 방안을 논의하고,
- 동년 6월 공식 통계작성반회의에서 통계보고 양식 및 지침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내에 최종안을 채택

○ 신규 원조형태분류에 따른 회원국의 통계 보고 실시

- 2009~2010년 기간 중 test 단계를 거쳐 2011년부터 2010년 원조흐름에 대하여 새로운 Table DAC1 보고를 실시

□ ODA 적격 국제기구 및 NGO 목록 개정⁷⁾

-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UNDEF) 등 15개 국제기구 및 African Medical and Research Foundation(AMREF) 등 12개 국제 NGO가 ODA 적격기구로 선정

□ ODA 적격 수원국 목록 개정

- 사우디아라비아 및 Turks and Caicos Islands는 2004, 2005, 2006년 GNI가 3년 연속 고소득국 기준을 초과하여 2008년 원조에 대한 보고부터 수원국 목록에서 제외

□ CRS 원조목적코드(Purpose codes) 변경주기 논의

- 현실에 적합한 목적코드의 적기 Update를 위해 목적코드의 변경에 따른 과거 Data와의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실행시기를 차별화
- 즉, 단순한 목적코드의 Renumbering 또는 분류내역(Classification) 변경의 경우, 다음 년도 1월부터 적용되나

7) 전체 목록은 <http://www.oecd.org/dataoecd/36/16/31724727.pdf> 참조

- DAC5 Sector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목적코드의 이동 또는 신규 목적코드의 도입의 경우, 실행시기를 매 3년 주기로 함. 다만, 일부 회원국들이 목적코드의 시의적절한 변경을 위해 실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every 3 year'를 'normally every 3 year'로 문구 수정
- 목적코드 변경요청 주체를 명시하자는 미국의 의견에 따라 변경요청 주체를 DAC 회원국 및 그 산하기구로 명시

□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 보고

- 사무국은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이행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특히 최빈국앞 기술협력원조⁸⁾의 구속성여부 보고의 불완전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
- 일본은 언타이드 원조가 항상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전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타이드 조건의 기술협력이 오히려 수원국의 기술역량 개발과 노하우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

□ 통계작성반회의 집행부 선임

- 2009년말까지 현 집행부 유임으로 결정
 - 의장 : Mr. Geert Deserranno (벨기에)
 - 부의장 : Mr. Hedwig Riegler(오스트리아), Mr. Hitoshi Shoji(일본)

□ 차기 회의 일정

- 제60차 통계작성반 공식회의 : '09. 6. 11~12
 - 비공식회의 : '09. 2월중

작 성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

목차보기

8) FTC(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는 최빈국앞 언타이드 원조 권고 적용대상이 아닌 반면 IRTC(Investment Related Technical Cooperation)는 적용대상에 포함

ODA 단신 3

DAC 제 12차 원조효과작업반(WP-EFF) 회의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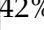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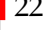
- 원조 효과성 개선을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파트너십 확대를 목적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산하에 설립된 원조효과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은 '08. 7. 9 ~ 11일간 제 12차 원조효과작업반 회의를 개최
 - 동 회의는 '08. 9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 예정인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제3차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준비사항 점검 및 관련문서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됨

2. 주요 토의 내용

- 2008 파리선언 진도지표 Monitoring Survey 결과 및 이행성과 평가보고서 리뷰
 - 2007년 통계를 대상으로 작성된 2008 파리선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파리선언 이후 원조의 효과성은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나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아래 표 참조)
- 제3차 원조효과성 관련 고위급포럼 준비사항 점검
 - 현재까지 총 62개 국가 및 기관*에서 포럼 참석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참여자가 약 200여개 국가 및 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개도국: 26개국, 공여국: 9개국, 지역개발은행: 9개, 기타기관: 18개

파리선언 진도지표⁹⁾ 2008 모니터링 결과

	진도지표	2005 기준	2008년 Monitoring 결과 (‘05년을 기준으로 ‘10년 목표치 달성정도를 표시)	2010 목표
1	실행가능한 국가개발전략	17%	 22%	75%
2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재정관리시스템		 36%	50%
3	수원국 예산으로 편성되는 원조	42%	 49%	85%
4	능력개발활동의 조정	48%	 50%	50%
5a	수원국 재정시스템의 사용	40%	 43%	80%
5b	수원국 조달시스템의 사용	39%	 42%	80%
6	중복적 PIU 지양	1832	 1,483	611
7	원조의 예측가능성	41%	 45%	71%
8	원조의 언타이드화	75%	 88%	[100%]
9	프로그램방식의 원조	43%	 42%	66%
10a	공동 Mission 실시	18%	 20%	40%
10b	공동 국가분석 실시	42%	 44%	66%
11	성과지향적 평가체계	7%	 9%	38%
12	공동책임성	22%	 22%	100%

□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¹⁰⁾ 2차 수정안 확정

- 제3차 고위급포럼에서 채택할 예정인 동 행동계획은 ‘05. 3월 제2차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된 파리선언의 진도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여국 및 개도국에 원조관련 행동규범을 명시
- 동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개도국 시스템 활용에 대해, 개도국에서는 공여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도국 시스템(예산지원, 조달시스템, 기타 공공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여국은 점진적인 개도국의 역량증진을 통해서 점차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기로 함

작성 : 엄성용, syum@koreaexim.go.kr

목차보기

9) 국제 ODA 동향(2006. 5호),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원조사회의 노력 및 시사점” 참조

10) 국제 ODA 동향(2008. 1호),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3차 고위급 회담 내용 초안” 참조

ODA 자료 1

세계은행 및 OECD의 2008년도 국가분류 현황

1. 세계은행의 국가분류

- 2008년 7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7년 1인당 GNI를 반영하여 국가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2008년도 국가분류 현황을 발표('08. 7. 1)
- 동 분류는 세계은행의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Operational lending categories)'서 '분석목적을 위한 소득그룹별 국가분류(Analytical classifications)'¹¹⁾와는 구분됨
- 2008년 세계은행은 IBRD의 상환기간을 종전의 20년, 17년, 15년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단일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Operational lending categories 도 기존의 5개 카테고리에서 4개 카테고리로 축소

세계은행의 국가분류기준 변경내용

(단위 : USD)

기존 카테고리	기존 지원조건	2007년	신규 카테고리	변경된 지원조건	2008년
		2006년 1인당 GNI 기준			2007년 1인당 GNI 기준
I	Civil Works Preference ^{주1)}	905 이하	I	Civil Works Preference ^{주1)}	935 이하
II	IDA Eligibility & 20-year IBRD Terms	906~1,735	II	IDA Eligibility	936~1,095
III	17-year IBRD Terms	1,736~3,595	III	IBRD Eligibility (Historic IDA) ^{주2)}	1,096~6,465 (1,096~1,785)
IV	15-year IBRD Terms	3,596~6,275			
V	IBRD Graduation	6,275 초과	IV	IBRD Graduation	6,465 초과

- 주 : 1.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수행되는 토목공사(civil works)의 입찰자 평가에 있어 국내계약자(local contractor)가 토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적격계약자에게 특혜(preference)를 줄 수 있음
2. Historic IDA 적격국은 과거 II그룹에 속했던 IDA 적격국들로 신 국가분류기준상 III그룹이며, III그룹 안에서 별도 표시됨

11) 세계은행은 분석목적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LICs): 2007년 1인당 GNI USD935 이하], 하위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LMICs): USD936~USD3,705],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UMICs): USD3,706~USD11,455], 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ies(HICs): USD11,455 초과] 등 4개 소득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용 중

- 2008년도 국가분류기준 변경으로 소속 카테고리가 바뀐 나라는 총 16개국
(붙임 참조)

세계은행의 국가분류 변경내역^{주1)}

국 가	변경전(I~V)	변경후(I~IV)	비고
인도, 수단	I	II	
동티모르, 몽골	I	III	II그룹의 범위가 좁혀지면서 ^{주2)} 2단계 상향조정
그루지야, 바누아투, 부탄	II	III	
카자흐스탄	V	III	변경전(I~V) 기준으로는 IV그룹으로 하향조정
벨로루시, 수리남, 피지	III	III	변경전(I~V) 기준으로는 IV그룹으로 상향조정
가봉, 러시아연방, 베네주엘라, 말레이시아, 터키	IV	IV	변경전(I~V) 기준으로는 V그룹으로 상향조정

주 : 1. '07년 자료에는 변경전 국가분류(I~V)를 적용했으며, '08년 자료에는 변경후 국가분류(I~IV)를 적용
2. Historic IDA 적격국가들이 II그룹에서 III그룹으로 조정되면서 II그룹의 범위가 좁아진 효과

2. OECD의 국가분류

- OECD는 2008년 7월 25일 '공적수출신용협약' 제11조 a)항 및 제33조 a)항에 의거, 상기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근거로 2008년도 국가분류 (Country classification)를 발표

세계은행 및 OECD의 국가분류체계 비교

세계은행		OECD ^{주)}
1인당 GNI (USD)	카테고리	타이드 원조
935 이하	I	적격
936~1,095	II	
1,096~3,705	III	
3,706~6,465		LMIC
	UMIC	부적격
6,465 초과	IV	

주 : OECD는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특정 국가의 세계은행 카테고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카테고리를 즉시 반영하지 않고 변경된 카테고리가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에만 반영함

- 단, 벨로루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Soft Ban 대상 국가는 1인당 GNI가 3년 연속 타이드 원조 수혜 적격기준(세계은행 카테고리 III 중 LMIC)을 초과한다면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OECD의 국가분류는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원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속성 원조(Tied aid)의 수혜 적격여부 판정과 수출신용의 지원조건(최장상환기간) 결정에 사용됨

○ 구속성 원조 수혜 적격성 판정을 위한 국가분류

- 적격국가 : '07년 이전 기준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17년 만기조건외 차관을 수혜받을 수 있는 국가 (즉, 현 기준으로 하위 중소득국 이하, 또는 세계은행 카테고리 I, II, III(LMIC)에 속하는 국가) → 현재 109개국
- 부적격국가 : 그 이외의 국가 → 현재 101개국

○ 수출신용의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

- OECD 카테고리 I : 세계은행 카테고리 IV에 속하는 국가(IBRD 졸업국)로 최장상환기간은 5년 → 현재 77개국
- OECD 카테고리 II : 세계은행 카테고리 IV이외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국가로 최장상환기간은 10년 → 현재 133개국

□ 2008년도 OECD의 국가분류 결과,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신규 확정된 나라는 5개국이며,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국가는 2개국임

- 브라질, 카자흐스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는 국가분류변경이 2년 연속 타이드 원조 부적격 기준('07년 \$3,595, '08년 \$3,705)을 초과해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루마니아는 3년 연속 타이드 원조 부적격 기준('06년 \$3,465, '07년 \$3,595, '08년 \$3,705)을 초과해 Soft Ban 국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쿠바, 피지, 자메이카, 수리남은 '08년 타이드 원조 부적격 기준(\$3,705)을 초과해, 앞으로 1년 더 현 카테고리를 유지할 경우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불가리아는 2년 연속 타이드 원조 부적격 기준('07년 \$3,595, '08년 \$3,705)을 초과해, 앞으로 1년 더 현 카테고리를 유지할 경우 Soft Ban 국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붙임 : 세계은행의 2007년도 국가분류 현황

자 료 : OECD, 'Country Classification 2008'[TAD/PG(2008)14], 2008.7

작 성 : 이 동 훈, danielee@koreaexim.go.kr

(붙임)

세계은행의 2008년도 국가분류 현황

카테고리	해당국가 (국가수)				기준 카테고리		
I (~\$935)	가나	말리	솔로몬군도	차드	I		
	감비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기니	모잠비크	아이티	케냐			
	기니비사우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코모로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에리트리아	코트디부아르			
	네팔	베냉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	베트남	우간다	키르기즈			
	라오스	부룬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사우토메프린시페	잠비아	토고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말라위	소말리아	짐바브웨	파푸아뉴기니			
	II IDA적격 (\$936 ~1,095)	지부티 카메룬 레소토 니카라과 인도* 수단*				II	
		Historic IDA (\$1,096~ 1,785)	가이아나 동티모르* 몰도바 몽골* 볼리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온두라스 이라크 이집트 인도네시아			콩고인민공화국 키리바시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III IBRD적격 (\$1,096 ~6,465)	\$1,786~3,705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과테말라 그루지아* 까뽀베르데 나미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연방 마케도니아 모로코 몰디브 바누아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탄* 사모아 스왈랜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자메이카 중국 콜롬비아 태국 통가 튀니지 페루	III		
		\$3,706~6,465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그레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레바논 루마니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벨로루시 #	벨리즈 보츠와나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 코스타리카 파나마 피지 #	
		가봉*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네주엘라* 세이셸 세인트키츠네비스 슬로바키아	앤티가바부다 적도기니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라우 폴란드	
IV IBRD졸업 (\$6,466~)					V		

주 : * 표시는 2007년(5개 카테고리 기준)에 비해 1단계 상향 조정 국가 (동티모르와 몽골은 기준 I 그룹에서 III 그룹으로 상향조정)
표시는 2007년(5개 카테고리 기준)에 비해 기준 III그룹에서 기준 IV그룹으로 상향 조정 국가 (신 분류 기준으로는 변화 없음)
- 표시는 2007년(5개 카테고리 기준)에 비해 1단계 하향 조정 국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국가분류 현황에서 제외됨
■ 표시는 최빈국

목차보기

ODA 자료 2

미국의 ODA 지원 체제 및 원조 기관

1. 개 황

- 미국의 원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Marshall Plan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체계화된 것은 1961년 냉전 하에서 대 개도국 경제지원을 통한 友邦國 확보를 위하여 케네디 대통령이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제정한 시점
- 대외원조법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인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청(USAID)이 설립
- 미국의 원조체제는 개괄적으로 양자간 원조는 국무부와 USAID가, 다자간 원조는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ODA 정책 총괄기능은 대외정책과 원조정책을 연계 지원하려는 목적에 따라 국무부가 소관하고 있음

2. USAID 개혁 및 원조체제

- USAID는 그 동안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독립기관으로서 활동하여 왔으나, 2006년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부장관의 원조시스템 개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함
- 동 개혁의 표면적 배경은 최대 규모의 원조를 지원하던 USAID의 원조프로그램이 국무부 및 재무부, 국방부, 농림부 등 연방정부기관의 개별 원조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은 점¹²⁾이나,

12) 예를 들면, 교육분야에 있어 2001~2006간 USAID,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약 30억불의 원조자금을 산발적으로 투입하였으나, 원조정책 조정 기능의 결여로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www.gao.gov/new.items/d07523.pdf>, 2007. 3.)

- 실제로는 9. 11 테러사건 이후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이라는 대외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원조정책 및 원조예산을 통합·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Umbrella Leadership System'으로 불리어지는 라이스 장관의 원조시스템 개혁의 골자는 국무부 장관 직속으로 차관급(Deputy Secretary)을 首長으로 하는 대외원조실(Director/Office of Foreign Assistance)을 설치하고, 동 실장이 USAID의 청장(Administrator)을 겸임하는 방식
- 동 원조행정 구조는 Office of Foreign Assistance 홈페이지가 www.state.gov/f/로 확정된 점에 기인해 일명 "F Process"라고도 불림
- 한편, 동 Umbrella Leadership System 하에서도 USAID 청장은 국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 보고체제만 갖추고 있을 뿐 여타 종전 USAID 업무의 독립성은 보장
- 신설 국무부 대외원조실은 미국정부의 대외원조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대외원조실의 주요 업무
 - 국무부 및 USAID의 원조전략 및 예산, 프로그램 총괄 조정
 - 정부 대외원조 전략의 개발
 - 대외원조 지원 메커니즘 및 기능의 통합 및 지휘
 - 정부부처, 원조 유관기관, 비정부원조기관(NGO)의 원조활동 가이드
- 이러한 Umbrella Leadership System(F Process)으로의 전환에 따라 국무부와 USAID 양 기관은 Joint Strategic Plan을 개발·실행하는 등 원조정책의 일관성 유지, 예산사용의 효율성 제고, 원조의 효과성 증대 등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나,
 - 다른 한편으로는 ODA 업무를 사실상 국무부가 장악·통제함에 따라 정치적·외교적 논리에 따라 원조가 지원되고 있어 일부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편중현상이 발생하는 등 원조 고유기능인 개발기능이 소멸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¹³⁾도 대두되고 있음

3. 원조 집행 기관 체계

가. 집행 기관별 비중

- USAID와 국무부의 원조 집행 규모가 전체 ODA의 50% 이상을 차지
 - '05년 통계기준으로 USAID가 ODA 원조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8%로 최대 원조기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무부는 13.4%를 차지함
 - 그러나 USAID가 원조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64%, '02년 50%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ODA 집행 노하우와 전문성이 높은 USAID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미국원조체계를 분산화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Peer Review of the United States, 2006)

미국의 ODA 집행기관별 비중

(단위: %)

	1998	2002	2005
USAID	64.3	50.2	38.8
국무부	12.9	18.6	13.4
국방부	3.5	5.6	21.7
재무부	12.6	10.7	4.3
농무부	2.3	5.8	13.9
보건복지부	-	-	3.7
기타	4.4	8.9	3.2
Peace Corps	-	-	1.1

- 기타 정부부처의 양자간 원조는 국방부가 이라크에 대한 지원 등의 증가로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부 4.3%, 농무부 13.9%, 보건복지부 3.7%, 평화봉사단 1.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무부의 경우 마약·테러자금의 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도국 금융정보분석,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률체제 구축 사업 등에 대하여 무상자금을 지원

13) "The more we give aid that way the less focused we are on real development results." 9. 11 테러사건 이후 원조의 상당 규모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 집중되는 등 소위 정치적 판단기준에 좌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Transforming U.S. Foreign Aid, 2007. 5. 3,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 <http://www.cfr.org/publication/13248/>)

나. 국무부와 USAID 조직 구조

- 미국의 ODA는 국무부 장관 직속의 대외원조실에서 양자간·다자간 원조 예산 편성, 원조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정부부처간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사실상 국무부가 원조관련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대외원조실내에는 약 25명의 직원이 지역별, 프로그램별로 국무부 내부조직 또는 USAID 및 여타 정부부처와의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양자간 원조의 대표적인 실행기관인 USAID는 지역별, 프로그램별 기능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총 인원 8,214명중, 미국인 직원은 2,394명 (본부 1,145명, 해외사무소 1,249명)이며, 기타 현지 직원 4,94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계연도로 2007년('06. 10 ~ '07. 9) 기준 USAID의 연간 원조 지출규모는 93억 달러 수준으로 인적자원개발(Investing in People), 경제성장(Economic growth) 분야 등에 지원하고 있음

회계연도 2007 USAID 원조예산 지출내역(Net Cost of Operations)

(단위: 백만불)

Objective	FY 2007
평화와 안전(Peace and Security)	459.07
민주정의사회구현(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1,303.05
인적자원개발(Investing in People)	3,029.68
경제성장(Economic Growth)	3,000.90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1,386.05
행정관리비용(Operating Unit Management)	117.15
Total	9,295.89

- 주: 1. 평화와 안전은 위험한 무기 및 지뢰제거, 민주정의사회구현은 법무부 공무원 연수, 경제성장은 영농현대화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2. FY 2007년도 USAID 10대 수원국 리스트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집트, 파키스탄, 수단, 케냐, 요르단, 남아공화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다. 기타 원조 기관

- 재무부, 농림부, 국방부 등 연방정부기관들은 국무부 및 USAID와의 자문·협의 등을 거쳐 자체 원조를 실시하고 있음
- 한편, 다자간 원조의 경우 국제연합(UN) 관련 기관에 대한 출연업무는 국무부가, 세계은행 등에 대한 출연 업무는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음
- ODA 업무와 관련한 재무부의 중요한 역할은 정책기능으로서, 국제협력차관보실(Under Secretary/International Affairs) 산하 국제개발금융채무관리국(Deputy Assistant Secretary /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and Debt)에서 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국제개발금융채무관리국의 아래 3개 과에서 개도국 원조 및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International Debt Policy : 대외채무 관리, Paris Club, 양자간 채무재조정, HIPC Debt Initiative, IMF/World Bank 등 채무구제 업무
 - Multilateral Development Institutions : 세계은행, IDB, ADB, IMF 등 파견 이사를 통한 정책 지원 (MDB 정책과 미국 대외정책과의 연계)
 - Development Policy : 개도국 경제개발, 빈곤감축, G-7, G-8, G-22, APEC, Summit of Americas 등 다자간 정상회담
- 이와는 별도로 OECD 협약 관련 협상, 타이드 원조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은 별도의 'Trade and Investment Policy Office 산하 Trade Finance Division'에서 담당

자 료 : OECD, Peer Review of the United States, 2006.

USAID 홈페이지(www.usaid.gov)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www.state.gov/f)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www.treas.gov)

USAID, FY 2007 Agency Financial Report.

작 성 : 백 남 수, whitehand@koreaexim.go.kr

정 리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

EDCF 소식

2008년 2/4분기 EDCF 소식

1. 2008년 2/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 스리랑카 전자정부 확충 사업 2차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스리랑카 재무기획부 (스리랑카 정보통신청)
- 총 사업비용 : 8.4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6.7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지방소재 150개 정부기관을 정부부문 인트라넷에 연결, OA장비·네트워크 장비·서버 등 각종 기자재 공급, 교육·훈련, 인트라넷 시험운영 및 자문 등
- 사업 개요
 - 스리랑카 정부는 '02년 세계은행의 협조 하에 e-Sri Lanka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04년 동 계획 세부프로그램의 하나로 EDCF와 세계은행의 협조유자 지원하에 정부기관 인트라넷 구축 1차 사업(Lanka Government Network Project)을 추진했음
 - 1차 사업을 통해 현재 중앙허브 설치 및 325개 정부기관 사이트 인트라넷 연결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본 2차 사업은 150개 정부기관 사이트를 추가로 정부 인트라넷에 연결하는 사업임
 - '07. 4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간 EDCF 정책협약에서 우선 지원기로 합의되었으며, '08년 5월 30일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었음

□ 방글라데시 철도기관차 구매사업(3차)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방글라데시 재무부 (방글라데시 철도청)
- 총 사업비용 : 39.7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8.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디젤전기기관차 10대 구매, 교육훈련·컨설팅 등 부대 용역

○ 사 업 개 요

- 방글라데시의 운송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철도기관차(286대) 중 42% 이상이 사실상 내용연수가 만료된 30년 이상의 노후기관차로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철도부문을 현대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0대의 신형 기관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06년 6월 요청하여 '07년 3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08년 6월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된 사업임

□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 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니카라과 재무부 (니카라과 국립기술청)
- 총 사업비용 : 16.1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2.6백만 달러
- 사 업 범 위 : 니카라과 수도 마나구아 2개소 및 지방 4개소 등 6개 직업훈련소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확충, 교육기자재 공급 및 교과과정 개발, 교사 및 관리자 초청연수, 국내전문가 현지파견
- 사 업 개 요
 - 니카라과는 낮은 중등학교 진학률(40%), 높은 도시청년실업률(21.5%) 등을 감안할 때 직업훈련교육 필요성이 큰 편이나, 직업훈련교육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음
 - 직업훈련소 확충 및 직업훈련 시설 개선을 위해 니카라과 정부가 '06년 8월 지원을 요청하고, '06년 11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된 사업임

□ 탄자니아 교량 및 연결도로 건설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탄자니아 재무부 (탄자니아 도로공사)
- 총 사업비용 : 31.3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5.0백만 달러
- 사 업 범 위 : 탄자니아 서부 지역에 위치한 말라가라시장에 총 길이 257m의 교량 건설 (현재 교량이 없어 약 300Km를 우회), 인근 Ilunde에서 Kaliua에 이르는 48Km의 연결도로 건설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 약 1,500km 떨어진 말라가라시장에 교량과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인도양의 관문인 수도로부터 서부 국경지역을 잇는 동·서 횡단도로 건설의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국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근국가와의 교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라오스 SEA 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라오스 재무부(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 총 사업비용 : 3.8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SEA게임(Southeast Asian Game) 주경기장까지 연결되는 도로 건설

○ 사업 개요

- 태국 등 동남아 11개국이 참여하는 SEA(South East Asian) 게임의 비엔티안시 개최(2009년 12월)에 대비하여 주경기장까지의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07년 11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고, '08년 3월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된 사업임
- 향후 비엔티안시 도시확장에 따른 도심교통 분산 및 지역주민의 편익 향상 등이 예상됨

□ 도미니카(공) 관세청 전산화 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도미니카(공) 재무부 (도미니카(공) 관세청)

○ 총 사업비용 : 28.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3.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수출입통관 및 화물관리시스템 개발, 백업센터 설치, IT 기자재 구매, 컨설팅서비스 등

○ 사업 개요

- 도미니카(공) 정부가 추진 중인 「5개년 경제개발계획」 및 「전자정부(e-Dominicana)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통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본 사업은 '05년 11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고, '06년 6월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된 사업임

- 본 사업은 한국의 통관자동화시스템 기술을 도미니카(공)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통관 및 화물관리 소요 시간 단축, 기업의 물류 및 금융비용 절감 등 관세업무의 효율성 증진, 관세징수에 따른 비리 근절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요르단 암만남부 폐수처리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 (요르단 수도청)
- 총 사업비용 : 36.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4.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설계용량 12,037m³/일의 폐수처리시설 건설, 관개용 펌프장, 관개용 배관(DI 700mm 주철관, 길이 3,850m), 관개용 저수지(용량 11,500m³) 등 관개시설 건설, 설계도면 검토와 건설공사 감리 등 컨설팅 서비스
- 사업 개요
 - 세계적인 물부족 국가인 요르단은 폐수를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수자원으로 인식, 예산 배분에 있어 폐수처리부문을 우선지원하고 있음
 - 암만 남부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반면, 인구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폐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본 사업은 암만 남부에 용량 12,037m³/일의 폐수처리시설을 건설,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과, 처리된 폐수의 농업용수 재활용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04년 6월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었고, 같은해 7월에 차관공여계약이 체결 되었음

2. EDCF 업무통계 요약 (2008. 6. 30 현재)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승 인*	집 행	기금조성(누계)
2005년	3,094	1,643	17,586
2006년	3,534	1,361	19,238
2007년	5,853	1,553	21,169
2008년(6월말)	696	709	21,327

* 2008. 6. 30자 환율 (₩1,056.56/U\$)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3개국 175개 사업, 3조 3,805억 원 ('08 : 3개국 3개 사업, 696억 원)
- 집행 : 38개국 140개 사업, 1조 8,440억 원 ('08 : 16개국 35개 사업, 709억 원)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누계 (1987~2008. 6)

- 지역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지 역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22,620	66.9%	12,419	67.3%
유 럽	3,271	9.7%	2,456	13.3%
아 프 리 카	4,247	12.6%	1,928	10.5%
중 남 미	2,377	7.0%	988	5.4%
중 동	1,132	3.3%	568	3.1%
대 양 주	158	0.5%	82	0.4%
합 계	33,805	100%	18,440	100%

○ 분야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분 야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9,623	28.5%	4,989	27.1%
통 신	4,294	12.7%	3,199	17.3%
에 너 지	3,412	10.1%	2,184	11.8%
수자원, 위생	4,980	14.7%	2,109	11.4%
환 경 보 호	224	0.7%	148	0.8%
보 건	2,993	8.9%	1,861	10.1%
교 육	3,253	9.6%	1,371	7.4%
공 공 행 정	2,351	7.0%	1,207	6.5%
농 수 입	1,739	5.1%	704	3.8%
기 타	936	2.8%	668	3.6%
합 계	33,805	100%	18,440	100%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